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190
----------	------

2022년 6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5월 25일 서윤기 의원 외 9명
2. 회부일자 : 2022년 5월 27일
3. 상정일자 :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6월 13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윤기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 특히, 장애인 탈시설과 같이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를 적용하는 대상자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함(안 제5조·제6조)

라. 탈시설 정책 자문을 위한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명시함(안 제7조)

마. 장애인 탈시설 지원 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을 명시함.
(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광모)

1 제정안의 개요

- 본 제정안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¹⁾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 대한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협의체, 사업의 범위 및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마련 등임.
- 제정안은 10개의 본칙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주요 사항별 검토

가. 세부내용 검토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안제1조), 정의(안제2조)등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것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구 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1. 장애인 거주시설	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 탈시설이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권리선언문)

	<p>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p>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화에 필요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p>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p>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p>
--	--

○ 안 제2조제2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5가지 유형이 있으나 이중 본 조례대상의 거주시설로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및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영유아 거주시설은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단기거주시설은 1개월 미만의 단기 및 일시적 주거서비스에 해당되며, 공동생활가정은 자립·독립생활이 보장되는 대안적 주거형태로 인정된다는 소관부서 의견이 있어 법적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대상 적용시설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2조제7호에 따른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²⁾의 정의규정을 인용하여 명시한 것임.

○ 참고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 선도적 탈시설 정책을 2009년부터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주택"이란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구조를 변경하여 새로운 주거모형으로 변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2) 기본원칙(안 제4조)

제4조(기본원칙) ③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단,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 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방안에 대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개인의 자기결정권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어 세심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 특히 소관부서에서 본 안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3개의 법무법인에서 안 제4조제3항의 단서조항이 민법제9조³⁾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나. 소관부서 및 관련단체 의견

1) 소관부서 의견

- 2009년 「장애인 생활시설 개선 및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하여 제1차(13년~17년), 제2차 18년~22년)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사업 실시중에 있음.
- 탈시설 정책의 당사자 단체의 반대와 우려가 있어 충분한 소통 및

3) 민법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협의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 필요.

2) 관련단체 의견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반대)
 - 실질적 당사자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과 그 가족을 배제하고 편향적인 의견으로 제정되는 조례는 용납할 수없으며 탈시설, 지역사회정착 등의 용어사용을 중지 당사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요구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반대) : 2022.5.28. 반대시위
 - 시설폐쇄, 신규 입소 금지 등의 탈시설 정책 및 입법 반대
 - 장애인 유형과 정도에 맞는 맞춤형 거주시설 및 고령 장애인 요양시설 확대 요구
 - 장애인의 거주시설 선택권 존중 및 당사자격인 부모회의 의견 반영 요구등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찬성)
 - 탈시설 조례 연내 제정 약속이행 촉구 및 재가 중증발달장애인의 24시간 지원체계 마련요구

3

종합검토의견

- 개인의 삶의 질이 중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 개개인의 삶이 강조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며 장애인복지정책이 거주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장애인정책의 시대적 패러다임임.
- 모든 장애인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과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할것임.

- 다만 , 탈시설 정책의 당사자·가족 및 장애인단체 등에서 동 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바, 탈시설 지원내용 및 서비스 제공방법 등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장애인 탈시설 적용대상 범위 및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수정함.

2. 수정안 주요 내용

- 탈시설 적용대상인 거주시설에 대한 범위를 수정함 (안 제2조제2호)
- 거주시설 변환에 대한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제6호)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7호)
-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에 대한 서울특별시·구청장의 의사결정 지원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단서)
- 중복 사용된 용어(탈시설 정책)를 정비함(안 제7조)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 : 7명(찬성 5 , 반대2)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190 관 련
----------	-------------

제안연월일 : 2022년 6월 21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장애인 탈시설 적용대상 범위 및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수정함.

2. 수정안 주요 내용

- 탈시설 적용대상인 거주시설에 대한 범위를 수정함 (안 제2조제2호)
- 거주시설 변환에 대한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제6호)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7호)
-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에 대한 서울특별시장·구청장의 의사결정 지원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단서)
- 중복 사용된 용어(탈시설 정책)를 정비함(안 제7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장애인거주시설 중”을 “장애인거주시설이”로,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통합,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는 삭제한다.

2.“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탈시설 정책”을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p> <p>6. “거주시설 변환”이란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중 탈시설 장애인의 <u>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u>을 말한다.</p> <p>7.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이 <u>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따라 지원하는 주거관리, 일상생활, 사회참여, 인권옹호 등 일체의 활동</u>을 말한다.</p> <p>제4조(기본원칙) ① ~ ② (생략)</p> <p>③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u>단, 스스로 의사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u></p> <p>제7조(협의체) 시장은 탈시설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p>	<p>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p>2.“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의한 시설을 말한다.</p> <p>6. ----- ----- 장애인거주시설이 -----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통합,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p> <p>7. <삭제></p> <p>제4조(기본원칙) ①~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 -----. <단서 삭제></p> <p>제7조(협의체) ----- 정책을 등을 자문하기 위한 -----.</p>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정의한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탈시설"(이하 '탈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한 장애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지원주택"(이하 '지원주택'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주택을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이하 '자립생활주택'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한 주택을 말한다.

6. “거주시설 변환”이란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통합,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②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공적자원을 충분히 지원한다.

③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
2. 탈시설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
3. 자치구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외 탈시설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탈시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탈시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운영 및 지원체계
3. 주요 성과기준 및 연차별 목표
4. 필요 재원 확보 및 배분

5. 그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탈시설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체) 시장은 탈시설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8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의 운영
2.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
3.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4.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5.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지원
6. 탈시설 관련 조사·연구·교육
7. 그 밖에 탈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탈시설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